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37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서지영 · 송언석 · 최수진
김대식 · 추경호 · 조승환
이인선 · 서천호 · 서일준
곽규택 · 김미애 · 주진우
김승수 · 정성국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이른바 '논문 쪼개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연구평가 체계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1

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u>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